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후변화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537)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538)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6539) ※ 허영의원 대표발의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개요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II . 검토의견	7
1. 기후변화인지 예산제도 도입(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
2. 기후변화인지 결산제도 도입(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3.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도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I. 개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6.
3. 회부연월일 : 2024. 12.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신설 등).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37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6.
3. 회부연월일 : 2024. 12.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40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6.
3. 회부연월일 : 2024. 12.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40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기후변화인지 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이 온실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예산서”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u><신설></u>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 ----- -----. 1. ~ 7. (현행과 같음) 8. <u>기후변화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기후변화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u>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36조의3(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기후변화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7. (생략) <u><신설></u> 8. ~ 14. (생략) ②·③ (생략)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 9. (생략) <u><신설></u> 10. ~ 16. (생략) ② ~ ⑧ (생략)	<u>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 ----- -----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기후변화인지 예산서</u> 8.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 ----- ----- -----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제36조의3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결산서</u> 10. ~ 16.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기상청의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11년~2017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3.0℃로 이전에 비해 높아¹⁾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폭염 발생의 빈도와 강도 및 지속성도 197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열대야의 발생 빈도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²⁾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또한, 「국가재정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⁴⁾.

1) 1980년대: 12.2℃, 1990년대: 12.6℃, 2000년대: 12.8℃

2) 기상청,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2020. 7.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별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최근 우리나라에서 평균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 강도 증가 등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의 하나로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기후변화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지방재정 전반이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여 기후변화 관련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며, 분석 및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방재정 지출을 조정하도록 하여 재정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출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부칙 <법률 제18240호, 2021. 6. 15.>
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제출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있어 보임.

첫째,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예산과 직접 연계하여 분석·평가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그 효과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이를 단년도 기준의 예산과 연계하여 성과목표를 세우고 효과를 분석·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후변화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정부로 하여금 ‘기후변화적응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의 개정안⁵⁾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해당 제도가 국가의 예·결산에 도입되는 방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예산·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온실가스

5)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4), 2025.01.22.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초기('23~)로서 국가도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지방도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점⁶⁾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여 기후변화인지 예산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환경부 주관, 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24.11.)

2. 기후변화인지 결산제도 도입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결산서”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12.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기후변화인지 결산서</u> 5.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8조의2(기후변화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기후변화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기후변화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3.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도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함)와 기금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이하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라 함)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8조의4(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제8조의5(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문 의 처
02) 6788-5337